

보건복지위원회
소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
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(양순임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164 |
|--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1일

발 의 자 : 양순임, 김육영, 소형준, 이용진,
경수현, 김경이, 정기혁, 정해숙,
정윤주, 권영애, 이인순, 정병기,
강수진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·증진 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써 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, 사업 규정(안 제4조)
- 라. 신체활동장려사업(안 제5조)
- 마. 신체활동장여위원회의 구성 등(안 제6조)
- 바. 위탁운영 등(안 제7조)

사. 참여자 지원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사전협의 : 건강정책과
- 라.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
운영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신체활동”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써 운동,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“
2. “건강증진”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, 생활 습관과 사회, 경제,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 · 정신적 ·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
3. “신체활동장려”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증진을 위해

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,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
2.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
3. 신체활동 취약계층(유아, 여성, 장애인, 노인 등)에 대한 지원
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장려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전략 및 목표
 2.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
 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신체활동장려사업)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업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
2.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
3.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민의 신체활동장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
 2.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평가 및 반영
 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 한다.

제8조(참여자 지원) 구청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이 확산·전파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